

인권정보자료실
G1.90

민주주의와 인권

2001년 제1권 2호

21세기의 민주주의와 인권 사상

김 중 섭

5·18연구소

21세기의 민주주의와 인권 사상*

김중섭**

중심어 : 민주주의, 인권, 개인주의/공동체주의, 보편주의/문화적 상대주의,
발전주의/생태주의

1. 문제제기

이 글의 목적은 21세기에 인권이 어떤 양상을 떨 것인가 밝히기 위해서 인권을 둘러싼 사상적 쟁점을 따져보고, 인권 실천의 제도적 장치로서 민주주의와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사회의 공간적·시간적 제약을 벗어난 실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21세기는 세계사의 맥락에서 볼 때 유례없이 이전의 어떤 세기보다

* 이 논문은 1999년 교육부(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으며, 경상대학교 통일평화인권센터 학술모임(2001. 11. 7)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경상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통일평화인권센터 소장

민주주의 정착과 인권 실현이 성공적인 상황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는 이의가 별로 없을 것이다. 1974년부터 1990년대 사이에 적어도 30개국 이상이 민주주의로 이행되는 등 짧은 기간에 민주주의 정부가 두 배로 늘어났다는 헌팅턴(Huntington 1993)의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20세기 말 20여 년 동안 민주화 추세가 세계 곳곳에서 확산되었다. 이렇게 민주주의가 전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된 적은 일찍이 없었던 것이다.

민주주의 못지 않게 인권도 지난 수십 년 동안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20세기 전반에 걸쳐 양차 세계대전과 곳곳에서 일어난 국지전에서 벌어진 인권 유린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가 수없이 일어났지만, 적어도 지난 50년 동안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세계적인 노력은 큰 성과를 이루었다(Donnelly 1993 ; Buerenthal 1997 ; Robertson · Merrills 1996). 유엔 헌장(1945)으로부터 시작하여 세계인권선언(1948), 사회권규약과 자유권 규약으로 나뉘어진 국제인권규약(1966) · 인종차별범죄금지협약(1973) · 여성차별철폐협약(1979) · 고문방지협약(1984), 어린이 · 청소년권리협약(1989) · 소수집단권리선언(1992) 등 여러 형태의 국제협약이 만들어지고 효력을 발휘하면서 인권은 세계의 보편적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권 발전의 추세는 세계 여러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진 인권 실행의 제도화에서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유럽평의회 중심으로 유럽 인권헌장 채택과 유럽인권재판소 설치 등 제도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인권 실행을 성취한 유럽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김중섭 1999 ; Robertson · Merrills 1993). 유럽만큼 성과가 크지는 않지만, 미주인권기구,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아랍 상설 인권위원회 등 세계 각 지역에서 인권증진 기구가 설립되고, 인권 관련 국제적 협약이나 헌장이 제정되었다는 사실도 인권 실천의 확산을 보여주는 것이다(Robertson · Merrills 1996 ; 박찬운 1999). 또 냉전 체제가 무너진 뒤 인권의 국제적 인지와 개념 확장, 인권 침해에 대한 집단적 대응,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활동이 더욱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온 것도 인권 발전의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이한 오늘날 인권 실행의 전망이 반드시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한 전망은 급변해 가는 세계의 변화를 고려할 때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¹⁾ 서비스산업의 확장, 지식 및 정보산업의 등장 등과 함께 일어나는 산업 구조의 변화, 기술과 과학의 획기적인 발달이 가져온 시간과 공간의 축소, 빠르게 진행되는 세계화(globalization, 지구촌화) 가운데 일어나는 세계 질서의 재편과 나라 사이의 교역 및 교류 증대 등 변화의 폭과 양상이 인류 역사상 유례없이 크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각 부문의 변화는 서로간에 영향을 미치면서 가일층 빠른 변화의 중폭 현상과 복합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상 생활 세계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세계화가 더욱 빠르게 확대되고, 활발한 국제적 교류가 일어나면서 국제 기구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체제가 세계의 조류로 등장하게 되고, 미국의 세계 패권 장악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발전 국가와 저발전 국가 사이의 격차가 더욱 커져 가고 있다. 생명 공학의 발달로 생명체의 생산과 변형에 큰 변화가 일고 있으며, 새로운 생산 수단으로서 정보와 지식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어 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인류 사회는 가족의 해체, 공동체의 와해, 빈곤, 전쟁을 포함한 폭력의 만연과 대규모화, 과도한 산업화로 말미암아 환경 오염의 심각 등 새로운 형태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된 인권의 이론과 실천에

1) 사회학자들이 '후기 산업사회' · '탈근대사회' · '지구촌 사회' · '정보 사회' · '연결망 사회' · '위험사회' 등 여러 개념을 활용하며 새로운 사회 변화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도 이렇게 사회가 급변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Bell 1973 : 기든스 1991 : Wagner 1994 : Castells 1996 : Bauman 1991 : 베 1997).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인권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고 해도 인권 보장 장치가 완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침해당하고 유린당할 수 있는 인권의 성격 탓으로 인권의 실천 수준은 사회적 여건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게 된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세계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린 사태를 보면 앞으로의 인권 상황을 낙관만 할 수 없다는 것은 더욱 확실해진다. 세계를 경악시킨 옛 유고 연방인 보스니아와 코소보 지역의 민족 분규 와중에서 자행된 인종 청소, 르완다에서 투투족이 벌인 후투족 대학살의 양상이나 성격은 20세기 전반기에 벌어진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나 일제의 생체 실험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국가간·계층간·지역간 빈부 격차의 확대,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 인종, 세대, 종교 등의 이유로 빚어지는 차별과 갈등, 긴장이 여전히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21세기가 시작된 오늘날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며, 또 그러한 인권 상황이 가까운 시간에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다. 특히, 다른 나라로 이민간 사람들이나 소수 인종 집단이 겪는 정치적 억압, 빈민, 장애인·여성·어린이·노인·동성애자 등 여러 형태의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인권 유린은 21세기의 인권 전망을 더욱 흐리게 한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문제는 사회마다 각기 다른 역사적 배경과 현재의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 조건이 다각적으로 작용하면서 각양각색으로 끊임없이 생겨나게 마련이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이 글은 21세기의 시대적 상황에서 벌어지는 인권 인식, 인권 실천 수준, 인권 실행에 관련된 사상적 쟁점을 따져본 뒤, 인권 실천과 민주주의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서 인권 증진을 위한 21세기 사회의 과제를 전망하고자 한다.

2. 인권의 사상적 쟁점

기본적으로 인권은 사회적·시대적 산물이다. 사회와 시대에 따라 인식의 폭이나 관점, 그리고 인권 실천의 제도가 크게 다르며, 그에 따라 다양한 사상적 논쟁이 벌어졌다. 그 논쟁은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고 선포하는 과정²⁾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인권의 성격과 내용, 인권 실천의 사회적 여건과 국제적 관계 등 인권과 관련되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쟁점으로 삼았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논의의 쟁점을 크게 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인권 주체의 측면에서 인간의 자유와 독자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입장과 인간의 사회성에 입각하여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공동체주의 입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둘째, 인권 실행의 편차에 대하여 모든 인간은 똑같은 권리를 누리는 존재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보편주의 입장과 각 사회의 사회적·문화적 차이에 따라 인권의 성격과 실천 내용이 다르다는 문화적 상대주의 입장을 견주어 보고, 마지막으로, 인권 실천의 사회적 역량에 대하여 경제 성장을 포함한 사회 발전이 인권 증진의 토대라고 보는 발전주의 입장과 과도한 산업화와 자본주의 발전으로 빚어진 인간 존엄 위협 현상에 주목하여 인권 지평의 확대를 도모하는 생태주의 입장으로 대비해 해보고자 한다.

물론 이 셋은 뒤얽혀 있으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며, 때로 구분하기 조차 쉽지 않은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논의의 명료화를 위해서 개념적 수준에서 분리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2)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배경과 과정은 존슨 1995·Burgess 1992 참고.

(1)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인권은 사람[인간]이 갖고 있는 권리다. 그것은 어떠한 개인적 조건이나 사회적 환경에 관계없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존재의 특별한 성격을 인식하고, 존엄성과 평등한 관계를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내재된 주체성과 사회성이라는 이중적 성격 탓으로 인권의 실행은 여러 가지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그러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인권의 주체다. 곧, 인권은 개인에게 있는가, 아니면 그가 속한 공동체에 있는가의 문제이다.

인간은 자율적인 판단아래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이면서, 아울러 집단이나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 없는 복합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나 친구 집단, 지역사회, 넓게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에서 성장하게 되는 인간은 불가피하게 소속된 공동체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관습과 규범, 가치는 개인의 행동이나 사고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관계의 설정에 작용한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는 사회적 조건에 따라 불평등하게 설정되며, 그 속에서 인간은 구속당하고 억압과 차별의 문제를 겪게 된다.

시대나 사회에 따라 유형과 내용이 달라도, 인간 사회의 근원적인 문제로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내재된 긴장과 갈등은 인권의 쟁점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한 쟁점 가운데 하나가 개인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개인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입장 사이에서 일어나는 권리와 의무·책임의 대립 문제이다. 전자의 대표적인 주장은 우리는 개인주의라고 규정하고, 후자의 경우를 공동체주의라고 규정하게 된다. 개인주의의 극단적인 행태를 이기주의라고 한다면, 공

동체주의의 극단적인 행태는 개인의 존재를 무시한 채 획일적인 사회적 과정을 강조하는 국가주의나 전체주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은 여러 유형으로 세분되어 설명될 수 있지만,³⁾ 이 글에서는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이념형 수준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개인주의는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인간의 속성 탓으로 집단에 억압되고 구속되어온 것에 대한 반발과 이어져 있다.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로서 자율성과 독자성을 갖고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인권은 인간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었다. 곧,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한 관계를 강조하는 인권 증진의 방안은 개인의 자유와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근대 인권 발전의 역사는 공동체로부터 개인을 해방시켜 인간의 고유한 권리를 찾는 과정이었지만, 그에 상응하여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긴장을 수반하였다.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는 종교적, 사상적 경향은 서구나 비서구를 막론하고 인류 사회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그것을 인간의 특별한 ‘권리’로 인식하여 개인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발전시킨 것은 근대 서구 사회였고(Buergenthal 1997), 그러한 인권 발전에 기여한 이론적 바탕은 자유주의였다. 17~18세기의 자유주의는 인간의 자유와 권한을 구속하고 억제하는 공동체에 대항하여 인간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자유, 생명권, 재산권을 주장하였으며(Shestack 1998, 206~208), 개별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로서 인간의 고유한 권리를 강조한 자연권 사상을 통하여 인권의 확장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자유주의 전통은 근대 인권 발전에 지대하게 공헌한 프랑스대혁명·미국독립혁명 등으로 이어졌고, 산업 혁명의 물결 속에서 부르조아 계급의 세력 확장에 기여하였으며, 절대주의 국가를 무너뜨리고 국

3)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사이에, 또 공동체주의와 전체주의 사이에 커다란 견해 차이가 있고, 더 나아가 개인주의나 공동체주의 안에서도 이론적 입장 차이가 크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황경식 1993).

민국을 형성하는 시민혁명의 이론으로서 근대 탄생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노명식 1991).

요컨대, 자유주의와 국민 국가의 형성은 인간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확산을 부추겼으며, 근대 인권 사상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 개인 중심의 권리에 주목하게 되었고, 정치적 영역에서, 또 시민 사회에서 인권 실행의 제도화를 촉진하였다. 또 대표자 선출을 위한 투표권의 확대, 집회, 단체 결성, 사상의 자유, 직업 선택, 거주 이주의 자유 등 개인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권리들 사회적으로 보장하였다.

이처럼 공동체로부터 벗어나 개인의 자유와 해방을 강조하면서 인간을 절대적 권한을 갖는 존재로서 보는 인권 개념은 “타인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을 거부하는”(롤즈 1990, 26) 입장으로까지 발전하였다. 개인으로서의 인간 존중이 강조되었으며, 인간의 존엄을 반영하는 인간의 권리[인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대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갔다.

사회의 억압으로부터 개인의 자유, 존엄성의 주체로서의 개인이라는 인식을 강조한 자유주의 또는 개인주의는 자연히 전통 사회에서 강조되어온 공동체의 질서와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과 대립하게 되었다. 사실상, 근대 인권 발전 역사는 인권 실행의 주체를 둘러싸고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가 대립해온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7~18세기에 발전한 개인주의에 비해 공동체를 강조한 이론 역사 는 훨씬 길며, 근대에 와서도 사회주의, 전체주의 등 여러 형태로 변형되며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동체주의자들은 개인주의나 자유주의가 인간이 공동체의 일원이며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성격을 망각한 채 개인의 권리만 중시한다고 비판한다. “공동체는 일대일의 결합과 구분되는, 구성원들

이 공유하는 사회적 결합 또는 그물망”(Etzioni 1995, 17)이라면서 사회는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곳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곧, 인간의 사회성, 사회적 관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만약 개인주의나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대로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게 되면, 개인은 자신의 이익과 권리만 추구하게 되고, 결국에는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다. 자연히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 고리가 끊어지고 사회적 관계도 사라지게 되면서 개인은 원자화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국가나 정부 권력이 개인의 자율성이나 주체성을 훼손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인에게 주어진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나 자유주의 입장에 대하여, 공동체주의 입장에서는 개인주의가 개인 권리만 치중한 결과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선(公共善)을 도모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한다(함재봉 1999, 20-21). 결국, 개인주의의 팽배 속에서 사회의 공동 문제를 해결하려는 헌신 없이 모든 인간이 이해 관계에 따라 행동하게 되며, 따라서 사회적 피해가 더욱 증폭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인권을 지나치게 개인에게만 제한하려는 폐단이 있으며, 인권을 근본적으로 개인의 권리로 한정한 나머지 공동체를 연대와 협력으로 꾸려 가는 또 다른 차원의 인권을 무시하게 되며, 그 결과 가족의 파괴, 마약과 범죄의 만연, 공동체의 해체 현상 등을 낳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까지 듦다는 것이다(한상진 1996, 14).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추구가 가져올 폐단을 지적하면서 인간의 권리 주장과 사회적 책임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모든 개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의 의무나 책임을 가지며, 서로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체 전체를 위한 공공선을 성취할 수 있게 되며, 모든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는 사회적 장치가 유지될 수 있게 된다. 개인주의에서 주장하는 대로 개인적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오히려 개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공동체의 사회적, 정치적 장치를 파괴하

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Etzioni 1995, 21).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공동체주의적인 주장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 주체성을 존중하는 전통과 거리가 멀다는 룩스(2000)의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룩스는 인권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사회로서 공리적 사회, 공동 사회, 프롤레타리아 사회를 들고 있는데, 이들 사회의 공통점은 공공선이나 집단적 목적 때문에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거부한다는 것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공리 사회는 모든 사람의 더 큰 이익을 위하여 각자가 당하는 희생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으며, 일제화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공동 사회는 일체감을 유지하는 테두리 안에서만 하위 공동체를 인정한다. 또 계급 소멸이 이루어졌다고 믿는 프롤레타리아 사회는 계급 소멸과 함께 인권 자체도 없어진다고 믿는다. 요컨대, 이들은 공동체를 우선시하면서 인권을 부수적이거나 상황 조건적으로 보는 것이다. 공리적 사회에서처럼 구성원의 인권이 “사회 이익을 위해서 폐지”될 수 있다고 보거나, 공동 사회처럼 인권 자체가 “공리성과 마찬가지로 허구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또 프롤레타리아 사회를 주창하는 이들은 인권이 “계급 투쟁의 열기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시대착오적”이라고 보는 것이다(룩스 2000, 38-40). 넓은 의미에서 공동체주의에 속한 이들의 이러한 인권 인식은 인권 증진과 실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주의는 인간을 독립적이고 자율적 인 존재로 인식하며 권리 존중을 강조하는 반면에, 공동체주의는 인권 유지와 증진을 위해서도 공동체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입장이 크게 다르며, 더 나아가 그 둘 사이에 긴장과 대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이해도 크게 다르다. 공동체주의 입장에서는 개인주의 사회관의 특징을 사회적 뿌리를 상실한 채 소외와 혼란, 사회 위계에 대한

불인정, 문화적 다양성과 그에 따른 지나친 변동, 끝없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 등으로 규정하는 반면에, 공동체주의 사회관은 가족 관계 중시, 성과 연령 역할 구분, 안정된 규칙, 위계 질서 존중과 집단 협력, 사회적 통제, 문화적 동질성, 사회적 갈등 부재와 질서 중시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개인주의 입장은 이와 전혀 다르다. 공동체주의 사회관을 억압적인 전통적 관계, 인종적 배타성, 위계 질서 강조와 견전치 않은 사회적 규제, 문화적 강요 등으로 특징짓는 한편, 개인주의 사회관은 역할 선택과 삶의 방식 선택 허용, 자율적인 자아 의식, 개인적 성취와 그에 따른 존중, 견전한 경쟁, 지위의 동등성, 다양성과 문화적 선택 허용, 견전한 갈등과 진보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본다(Howard 1995, 110-111).

이와 같이, 사회 질서의 유지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공동체주의 관점과 개인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극대화하려는 자유주의 관점은 사회 인식 수준이나 상대방 입장에 대한 평가 측면에서 극히 대조적이다. 그러나 그 두 관점은 모두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과 인권 침해를 부추기는 부정적 측면을 똑같이 갖고 있으며, 그 성격은 오늘날 사회에도 예외 없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자유주의의 대립은 인권을 둘러싸고 21세기에도 여전히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또 삶의 주체는 개인이지만, 그 삶의 터전은 공동체라는 특징 탓으로 그 둘 사이의 대결은 쉽게 판가름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공동체주의는 보수주의나 국가주의와 결합하여 질서 유지를 강조하면서 국가 역할의 축소에 저항하게 될 것이다. 집단 중심적인 질서와 가치를 가족이란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이른바 가족주의 또는 유사 가족주의는 개인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침해하는 사회적, 심리적 및 문화적 기제로 작동하게 될 것이며(박영신 1995), 민족이나 국가 중심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는 지역

간 분쟁의 이념적 밑바탕을 제공하며 끊임없는 분쟁 체제를 유지해 갈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동체주의적 집단 우선주의는 인권 보호와 증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요소를 갖고 있다. 보기론 들어, 과학 발전에 따라 정교해진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나 몰래 카메라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사생활(privacy) 보호가 더욱 어려워지고, 그런 것을 집단적으로 즐기는 사회 의식과 결합하여 ‘인권’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을 조장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또, 과학 문명과 컴퓨터의 발달에 따라 국가를 포함한 절대 권력 집단이 개인의 영역을 감시하고 간섭하는 것이 쉬워지면서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국가나 전체 사회의 이익이란 명분으로 개인의 전자우편물을 감시하고 해독하는 에셀론의 확산에서 보듯이⁴⁾ 그러한 우려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집단 중심의 경제적 권리 향유, 사회 안정을 통한 집단 안보 등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개인이 그런 것들을 권리로서 능동적으로 주장하며 누리기보다는 공동체에서 베풀어주는 시혜로서 수동적으로 받을 때이다. 공동체주의에서 주장하는 인간 존엄성은 개인의 자율성과 개인 생활의 존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단 성원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주의적 가치에서는 인권을 충분히 누리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Howard · Donnelly 1989, 83-84).

국가 역할에 대한 판단 역시 입장에 따라 확연히 다르다. 개인주의 입장에서는 전통 사회의 공동체에서 행해지는 관습이나 사회적 요구가 인권 증진의 걸림돌이었는데 그러한 공동체의 최대 규모가 국가였다면

4) ‘빅 브라더’가 감시 카메라를 통해 사람들의 삶을 항상 감시하는 조지 오웰의 『1984년』에서처럼 ‘유리병 안의 삶’의 모습은 오늘날 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국가에서 행하는 감시 체계의 한 사례인 미국의 감청 시스템 ‘에셀론’은 전세계 통신망의 70%를 맡고 있다고 한다(『동아일보』 2001. 3. 12.).

서 우려를 감추지 않는다. 곧, 근대 사회에서 국가가 저지른 인권 유린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우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나치 독일이나 스탈린의 소련에서 보듯이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로 무장한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체제가 국가 권력을 통한 인권 침해나 유린을 자행한 사례가 수없이 많다. 이와 같이 국가가 인권 침해의 주체였으며, 국가 주권 불간섭이라는 국제적 관행 탓으로 인권의 보편적인 적용이 어려웠던 인류 역사가 아직도 생생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인권 발전의 걸림돌이 될 개연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 전체 수준에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국가와 같은 공동체의 기구가 인권 증진과 보증에 기여하는 도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보기로 국가나 국제 기구의 인권 보증 사례다. 만약 어떤 조직이나 집단이 인권 침해나 인권 유린을 자행한다면, 허약하기 이를 데 없는 개개인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는 힘들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국제 기구가 인권 증진과 보호의 제도적 장치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야 하며, 그렇게 될 때 그 성과가 대단히 크게 될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장 성공적으로 인권의 집합적 보증과 실현을 이룬 유럽인권현장과 유럽평의회, 유럽인권재판소를 비롯한 일련의 조약과 기구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김중섭 1999 ; Robertson · Merrills 1993). 개인이 겪는 인권 침해를 해당 국가를 뛰어 넘어 유럽 전체의 차원에서 시정하고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었던 것이다. 유럽의 이러한 집합적 보증 체계는 시간이 흘러 굳게 정착되어 가면서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이러한 성과는 모든 인간이 인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과 함께, 유럽이라는 공동체가 구성원 모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책임져야 한다는 합의가 깔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유럽의 사례는 개인의 존엄성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또한 개인의 권

리를 사회 구성원이 똑같이 지켜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공동체주의의 주장을 탄력성있게 활용할 때 인권 실현의 제도적 장치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사회 전체나 국제 사회에서 인권이 핵심 가치나 행위 기준으로 자리잡게 된다면 인권의 집합적 보증은 훨씬 빨리 실현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인권 보증과 증진을 실행하는 국가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Galtung 1994, 1장).

공동체주의와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역시 인권 증진에 미치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함께 갖고 있다. 우선, 개인주의 주장과 전통이 이론적으로 인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맥락에서 21세기에도 인권 신장의 자유주의적 기여와 필요성은 여전히 강조될 것이다. 그러나 서구의 자유주의적 인식은 자율성을 강조한 나머지 인간을 사회와 격리된 존재로 인식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Pollis, 1982 ; Donnelly, 1989 ; 88쪽에서 재인용). 사회적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주의적 입장은 권리의 범위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한정하며 인간을 사회에 대항하는 것으로서 본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Pollis, 1998).

이러한 평가는 오늘날 세계화의 물결과 함께 새로운 지배 이데올로기로 확산되고 있는 신자유주의가 결과적으로 인권의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효용성 중대, 국가 개입 축소, 탈규제, 복지 기능 축소로 요약되는 신자유주의는 경쟁을 통한 이익 증대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사회에서 보호하고 배려한다는 기본 원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경쟁 이전에 사회 구성원에게 능력을 갖추도록 기회를 공평하게 주어야 할 사회적 책임을 져버리며, 더 나아가 경제적 권리 개념이 부적절하거나 필요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조차 한다.⁵⁾ 결과적으로 경쟁에서 탈락

5) 호워드(Howard 1995, 2-3)는 이것을 급진적 자본주의로 규정한다.

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 부족과 그에 따른 인권 침해가 일어날 요인들을 방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해야 하는 경제적·사회적 권리 증진을 소홀히 함으로써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깨뜨리고 인권 실행의 퇴보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이것은 전통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영역을 뛰어 넘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영역으로 확대되는 오늘날의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게 되는 것이다.

인권 실행이 퇴보하면,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이 피해를 입게 될 집단은 여러 유형의 사회적 약자들이다. 해외 이주민, 장애인, 노인, 여성, 어린이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특히 경제적, 사회적 권리 측면에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가 분리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축소는 결국 인권 전체의 퇴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요컨대, 개인 중심으로 권리 실행을 강조하는 자유주의는 인권 실행 자체의 퇴보를 가져올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을 개인의 영역으로 제한하여 정치적·시민적 권리만 강조하는 입장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아울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곧, 도널리(Donnelly 1989, 5장)의 주장대로 적정한 수준의 공동체 역할을 인식하는 개인주의가 요구된다. 공동체의 집단적 보장 체계를 강화하면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개인의 자율성이나 자유를 인권 신장에 기여해 온 자유주의 입장의 기본 개념을 지키면서 아울러 경제적·사회적 권리 영역을 포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개인의 자기 존재를 보장하는 장치나 무제한적인 재산 축적의 이념으로 인식되는 ‘소유적 개인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적이면서 과감한 사회 민주적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Donnelly 1989, 88-106). 곧,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 전통적

인 자유주의적 인권 인식을 급진적, 사회 민주적 개념이 포함된 자유주의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관계적이고 최저 수준의 근대 자유주의 인식을 뛰어 넘어 개인의 자율성과 주체성과 함께 ‘인간의 사회적 존재’ 측면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새로운 인권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 점을 도널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자유와 평등의 자연적 또는 인간적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 그런 권리를 즐기기는 불안하다. 사회와 국가는 인권을 좀 더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정부는 긍정적인 법과 실행 방안을 통하여 인권을 실제로 보호하는 한에서만 정당성을 갖는다(Donnelly 1989, 90).

인간의 존엄성을 평등하게 누리는 장치로서 사회나 국가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동체보다 개인을 우선시하면서, 아울러 사회 조직체가 개인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곧, 공동체와 개인이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조화로운 관계 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무시한 채 자유 지상주의적인 권리 주장만 한다면 공동체는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권리 주장에는 일정 수준의 책임과 의무가 수반된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으로의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면서 아울러 인간 본연의 존엄한 위상이 훼손되지 않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권리 주장과 책임/의무 수행의 병행에 내재된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둘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지만, 사회 구성원에 따라 권리와 책임/의무의 강조점이 다소 다르기 때문이다. 권리의 경우, 모든 사회 구성원이 똑같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인권 침해의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적 약자’이다. 사회적 약자는 권력이건, 경제력이건, 힘을 갖고 있는 ‘사회적 강자’보다 인권 침해를 겪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회적 배려는 사회

적 약자를 향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책임 수행의 경우는 정반대로 나타난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모두 똑같은 책임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사회의 주요한 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의 기회나 권한은 주로 사회적 강자에게 주어져있다. 반면에, 사회적 약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사회적 강자에 비해서 훨씬 적다. 사회적 권력 행사는 각 사회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학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책임을 ‘똑같이’ 요구하는 것은 인류 사회의 진행 과정을 도외시한 몰역사적인 주장이거나, 사회의 성격을 무시한 채 관념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 주장이거나, 이데올로기적인 편향성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보듯이, 극단적인 개인주의자나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권리-지상주의’와 극단적인 공동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책임-분담주의’는 일정한 수준에서 한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권을 둘러싼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사이의 논쟁은 21세기에도 여전히 끊이지 않고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의 내용과 관점, 실행 장치는 사회적 여건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어 가는 사회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게 될 것이다.

(2) 보편주의와 문화적 상대주의

공동체는 제각기 고유한 역사적·문화적 경험을 갖고 있으며,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 현상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각 공동체는 제각기 다른 사회적 관행과 제도를 갖고 있다. 보기를 들어,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대우는 서구와 현저하게 다르며, 동양의 전통 사회에서 노인이 누리는 사회적 대우는 근대 서구 사회의 경우와 다르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평등한 대우라는 인권의 보편적 가치와는 별개로 인권 실행에 대한 논란이 일

게 된다. 곧, 관습, 규범, 가치 등 사회 문화 전반적인 여건과 정치 경제적 조건이 인권 실행과 밀접하게 이어져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권의 주체는 개인이지만, 그는 공동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인권 개념 및 실행과 사회적 여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입장은 크게 두로 나뉘어진다. 곧, 인권은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존중 대상이며 가치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각 사회는 고유한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인권 인식이나 실행 방식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흔히 전자를 인권의 보편주의로, 후자를 인권의 문화적 상대주의로 규정한다.

인권의 보편주의는 어느 사회에서든지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똑같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인권운동 이론가들과 활동가들의 지지를 받는 반면에, 문화적 상대주의는 서구 중심의 인권 이론이나 인권 실행에 반발하는 비서구 사회의 정치가들이나 이론가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대체로 보아 보편주의와 문화적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집단의 지역적 특성은 세계 질서를 주도해 가는 서구와 그에 종속된 양상을 보여주는 비서구로 크게 나뉘어져 있다. 인권 실행의 보편주의가 앞서 논의한 인권 주체의 개인주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둘 사이는 서로 상응하며 상당히 친화력을 갖고 있다. 또 문화적 상대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초점이 서로 다르지만, 공동체를 강조하는 문화적 바탕에서, 또 사회마다 각기 다른 전통과 관행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인권 실천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 둘은 서로 친화력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인권 발전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지역적 차이에 따라 인권 실천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인권의 보편주의를 따져보면 그 안에도 다양한 논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이 기본적 권리를 누려야 하는 근거에도 여러 견해가 있는데, 크게 보아 둘로 나뉘어 진다. 곧, 인권을 인간 본성이나 욕구에

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인간 본성론과 인권이 사람의 도덕성에 뿌리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역사적 발전에 따라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역사적 산물론이다. 인간이 이성과 도덕성에 근거하여 사고하고 판단한다는 점에서 인권의 근거를 찾는 거워쓰(Gewirth 1982)나,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 평등, 사회적 인정, 존엄성 등의 욕구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는 필드와 나르(Fields · Narr 1992)의 주장을 인간 본성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모든 인간이 인간이란 존재로서 자유와 존엄을 누릴 권리를 똑같이 갖고 있으며 사회나 문화의 차이에 무관하게 그 권리는 존중되고 보편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인간의 도덕적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하면서도 인권의 발전은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도널리(Donnelly 1989)나, 인권은 인간이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권 문화의 발전을 통하여 인권의 보편성이 확산되어 왔다는 로티(2000)의 주장을 역사적 산물론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 산물론자들은 서구에서 발전된 인권이 이제 세계적인 보편적 가치로 확산되어 간다는 역사적 과정을 중시한다.

최근 서구의 도덕 철학자들 중심으로 강화되어 가는 인권 보편주의는 지난 200여 년간 서구에서 일어난 인권 발전의 전통과 밀접하게 이어져 있으며, 그 뿐만 아니라 인간이 태어나면서 인간 고유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17~18세기의 자연권 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며 그들은 조물주에 의해 일정한 불가양(不可讓)의 천부의 권리를 부여받았으며”라고 명기하고 있는 미국의 독립선언이나, “인간은 권리에 있어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杉原泰雄 1995, 34·40)고 규정한 프랑스 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제1조에 나타난 인권의 보편주의는 자연법 사상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처럼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권리에 의해서건, 권한

을 부여받는다는 보편주의적 인식 속에서 서구의 근대 인권이 발전되었던 것이다. 인권의 보편주의 전통은 20세기 인권 발전의 이정표로 평가되는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으로 이어졌다.⁶⁾ 서구 지도자들이 주도하여 만든 이 인권 선언은 인권을 “모든 인간이 태어난 존엄성과 평등하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규정하며, 그것이 특정한 문화나 사회적 여건에 의해 제한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95).

유엔에서 결의한 인권의 보편주의 선언은 전세계적인 인권 실행과 인권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후 50년 동안 전세계적 수준에서 인권 실행이 모색되고, 그 기준과 제도적 장치가 각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인권 중심의 국제 질서와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제 인권은 더 이상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쟁점이 되었고, 인권 보증과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규범이 국제 사회를 지배하는 준칙(regime)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러한 준칙에서 일탈할 경우 국제 사회의 제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Donnelly, 1993 ; Evans 엎음 1998).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한 인권의 보편주의는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에서도 재확인되었다.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고, 불가분하며, 서로 의존하고 관련되어 있다. 국제 사회는 인권을 전세계적으로 공정하며 동등한 양식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국가적 지역적 특수성과 다양한 역사적·문화적·종교적 배경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그들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체계와 관계없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⁷⁾

- 6) 1948년 12월 10일 반대하는 나라 없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하고 선포한 이 선언의 명칭(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인권을 나라간의 관계에서 결정된 선언(international declaration)이라고 하지 않고 인간 누구나 갖는 권리에 대한 보편적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95).
- 7)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 12.07.93. A/CONF.157/23 (5항) <http://www.unhchr.ch>에서 문건 데이터베이스 참조.

이와 같이 인권이 국제 사회의 준칙으로 확산되고 인권 보호와 증진의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보편주의를 세계 모든 사회가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다. 그 증거를 1993년 비엔나 인권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열린 각 지역회의의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정경수 · 김정훈 1999, 81-84). 각 지역회의 사이에 다소 차이는 있어도 회의 내용을 담은 선언문에는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불가침을 존중하며 인권과 관련지어 내정 간섭을 하지 말 것과, 인권의 보편성을 언급하면서도 각 나라의 다양하고 특수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회의 결과인 1993년 4월의 방콕정부선언은 아시아 국가의 인권 인식이 서구와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Freeman 1998, 25-26). 인권의 보편성 자체는 인정하지만, 문화적 차이에 따라 실행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비엔나 선언은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하면서도 지역의 다양성을 부차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비서구 사회 정치 지도자들 및 학자들이 제기한 차별적인 인권 실행 주장에는 인권의 문화적 상대주의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곧, 인권을 지나치게 서구 중심으로 파악한다고 비판하면서 인권 실천에는 각 사회의 형편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편주의와 문화적 상대주의는 인권 자체의 인식보다는 인권 개념과 실행을 둘러싼 역사적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경향이 크다. 사회적·문화적 조건에 따른 인권 실행의 인식 차이는 이미 1966년 유엔에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인권A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인권B규약)을 분리하여 채택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났다. 동서냉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소련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소홀히 해온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부문을 강조한 반면에, 미국과 서구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국가는 공산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민적·정

치적 권리 침해를 지적하며 공산주의 국가를 비판하였던 것이다. 결국 동서 진영의 냉전 체제 탓으로 분리되어 채택된 국제인권규약은 1976년에 각각 발효되기는 하였지만, 비준 과정에서 정치적 사회적 입장에 따라 각 나라의 인권 인식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던 것이다.⁸⁾

문화적 상대주의 지지자들은 인권의 핵심 내용인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서구 사회에 고유한 것이 아니라 비서구 사회에서도 예전부터 있었다고 주장한다. 단지, 그 근거나 양상이 사회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⁹⁾ 천부 인권설이나 자연권을 주장하는 서구 문화와 다른 양상이지만, 비폭력, 자비심을 강조하는 불교의 전통과 근대의 실천 방식(연기영 1996), 집단 권리와 구성원의 권리를 강조하는 이슬람의 코란 경전(무자파 1996), 덕을 강조하는 유교 전통(함재봉 1996) 등에서 인권 개념과 실천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서구 사회에서는 고유한 문화 전통에 따라 인권 개념이나 실행 방식을 이해하고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시아적 가치”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삼열 1999 ; 장은주 2000 ; 정영선 1999 · 2000a · 2000b ; 도널리 1996 ; 함재봉 1999 ; Freeman 1996 · 1998 ; 이승환 1998). 이 논쟁은 아시아 사회의 가치가 서구와 다르며, 인권 실행의 내용과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문화적 상대주의 입장의 정치 지도자들과 학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서구 사회와 달리, 아시아 사회는 사회 질서, 사회적 조화, 공동체 이익 우선, 집단

8) 단적인 보기로서,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미국은 아직도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966), 여성차별철폐 협약(1979), 어린이 · 청소년 권리협약(1989)을 서명만 한 채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UNDP 2000, 51).

9)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인권 개념과 실행에 대한 포괄적 논의 내용을 담고 있다(An-Na'im 1992 : 계간『사상』 1996 겨울 특집, “동아시아의 성장과 인권”).

지향 등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자연히 아시아 문화권의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관계를 강조하고 개인보다는 가족이나 집단을 중시한다. 그 결과 개인 중심적인 서구에서는 사회 병리 현상이 심한 것과 달리, 아시아 사회는 규율이 잡혀있고, 안정되고, 덜 일탈적이며, 사회 구성원들이 응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인권 실천의 발전 과정도 서구와 비서구 사회가 다르다고 강조한다. 식민지 지배를 받고, 착취당하고, 저발전 상태인 비서구의 나라들과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 세력이었던 서구 국가들은 처해 있는 사회 상황이 다르며, 그에 따라 인권 인식이나 실행 수준, 목표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식민지 치하에서 벗어난 개발도상국가들의 당면 과제는 빈곤으로부터 벗어나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일정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며, 대외적 종속과 억압에서 벗어나 집단 자결권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유를 강조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보장보다 생존을 위한 경제적 조건 개선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가족과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전통적인 집단 중심 가치가 구성원 전체의 인권 증진에 유용하다는 것이다.¹⁰⁾ 그렇기 때문에 집단 중심의 고유한 전통을 가진 아시아에서는 개인주의적인 서구와 다른 방식으로 인권에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시아 가치’를 주장하는 인권의 문화적 상대주의 입장에 대하여 인권의 보편주의를 지지하는 이론가들은 여러 측면에서 반론을 제기한다. 우선, 프리먼(Freeman 1996 · 1998)은 그들이 제기하는 내용의 부정 확성을 지적한다. 인권의 문화적 상대주의자들이 제시하는 것처럼 사회적 조화나 개인보다 공동체 이익을 우선시하는 가치가 반드시 아시

10) 단적인 보기에는 1989년 중국 북경에서 일어난 천안문 사태에 대하여 국제 사회의 비난이 비등할 때 몇 사람의 인권보다는 다수의 인권을 위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중국 지도자들의 입장이나, 빈곤 문제 퇴치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 같은 것은 부차적이라는 리콴유 싱가포르 수상의 입장에서 볼 수 있다(벨 1996, 47).

아예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보다 집단을 강조하는 사회주의나 공동체주의 전통은 서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질서와 권리의 균형 문제는 17세기이래 서구 정치 사상의 핵심적인 쟁점이었다는 것이다(Freeman 1996, 355-356). 아울러 그는 아시아의 ‘가치’나 고유한 ‘문화’를 내세우는 맥락이나 내용을 따져보면서 특정한 집단, 특히 지배 집단이 주장하는 가치와 문화가 일반 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장은주(2000)는 문화적 민족주의에서 강화된 아시아적 가치와 유교민주주의 논의가 인권의 개인주의가 갖고 있는 공동체주의적 전제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인권의 공동체주의’가 전제하는 사회의 규범과 도덕적 지향이 ‘유교적 공동체주의’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인권의 보편성은 인권 이념이 표현하는 규범의 보편주의적 지향이며, 구성원 모두가 민주공동체 건설에 참여하게 되는 ‘절차적’ 보편성이며 ‘범위’의 보편성이라는 것이다(장은주 2000, 170).

한편, 마폴딩(Marfording 1997)은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문화적 상대주의가 내걸고 있는 ‘문화’가 사실상 문화적 이데올로기에 의존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대단히 동질적이고, 위계 질서를 강조하고, 강한 집단 지향성을 갖고 있는 일본 사회는 자연히 조화, 사회적 합의, 집단에의 충성심을 최고의 가치로 삼게 되었다. 이러한 가치는 도쿠가와 시대(1600~1868), 메이지 시대(1868~1912)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시기, 그리고 2차 대전이후 시기에 걸쳐 정치·경제·사회 지도자들에 의해 서 문화 이데올로기로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문화 속에서는 개인의 권리 증진과 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마풀딩의 논의는 추상적 수준에서 문화적 상대주의를 논의하는 것 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한 문화 및 상징 조작은 사회 구성원의 실제 생활 속의 의식이나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며, 심지어 왜곡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인권의 문화적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집

단이 대부분 민주주의 실현과 인권 실행이 더딘 국가의 지도자들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아시아적 민주주의’가 ‘아시아적 권위주의’의 동의어로 전락하였듯이 인권의 상대주의 강조는 그 사회의 인권 문제를 호도하려는 의도에서 제기되었다는 의혹을 받게 된다. 권위주의 체제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인권 침해와 억압에 대한 눈가림이나 이론적 방패막으로 문화적 상대주의를 들먹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서구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경험한 사회에서 문화적 상대주의는 문화적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이론적 근거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호소력을 갖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¹¹⁾ 이 점은 인권의 보편주의가 세계 폐권을 장악하고 있는 서구 강대국의 이념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는 한 일정한 수준에서 효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강대국의 간섭이 자행되고, 인권 실행을 빌미로 세계 규범의 수용을 강요하는 상황이 빚어질 때마다, 약소국은 반발하게 되고, 그 결과 인권 자체에 대한 거부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¹²⁾ 이런 점에서 인권 실행과 문화적 상대주의는 21세기에도 여전히 논란의 중심점에 있게 될 것이다. 인권의 보편주의가 거부할 수 없는 국제적 규범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문화적 상대주의 역시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문화적 상대주의는 국가 주권을 강조하고 이웃 국가나 국제 사회의 간섭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공하며, 문화적 자율성을 강조하며 인권

11) 단적인 보기로서, 일반 학생들 대상으로 가진 강의에서 ‘인권제국주의’에 대한 경계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글을 볼 것(이승환 1998, 118-119).

12) 미국이 인권 침해와 유린을 빌미로 중국에 경제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나, 코소보의 인종 청소에 대한 응징을 빌미로 벌어진 나토의 유고 공습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하여 주권 국가 보호라는 명분으로 자행한 미국과 나토의 무력 개입에 대한 이라크의 저항 등이 모두 인권과 관련된 국제 분쟁의 단면을 보여준다.

문화의 유입을 가로막는 이론적 베풀목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문화적 상대주의는 또한 개인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무시한 채 집단 중심의 사고를 강요하는 이론적 도구로 작용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문화적 상대주의가 오늘날 인권 증진을 위한 세계적 노력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은 일정한 부분에서 타당성을 갖게 된다 (Freeman 1998, 28). 국가 지도자들이나 민족주의적 이론가들은 인권의 보편주의를 흔히 ‘문화적 제국주의’로 비난하지만, 사실 그들의 입장은 국가 주권과 민족적 정체성을 방어하는 것이 주목적일 뿐이지, 각 사회에 맞는 인권 보호와 증진 방안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의 보편주의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인권은 인간의 자유와 안녕 복리를 위한 사람다운 삶의 기본 요건을 담고 있는 것이다. 곧, 인권을 인정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평등한 관심과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며, 그 바탕에 인류애(humanity)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Freeman 1994). 곧, “인권의 보편주의 개념은 모든 인간이 복잡한 세계 구조와 다양한 문화적 집합적 행동, 최소한의 물질적 지원, 심리적 육체적 안전, 그리고 숨쉬고 움직이고 의사 소통할 자유를 향유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상호간의 풍요와 자유로운 교류를 최대한 누리며, 부당한 지배를 최소화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설정한 것이다”(Freeman 1998, 35). 그러므로 인권 증진은 특정한 지배 집단의 권력을 유지를 막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며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인권의 보편주의가 문화적 다양성을 무시하거나 획일성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아시아적 가치’라고 강조하는 집단에의 의무나 권리가 아시아 지역에만 고유한 것은 아니다. 권리 없는 의무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권리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만약 그 둘 가운데 어느 것 하나만 강요하고 제도화하는 사회는 건강할 수가 없다.

이러한 보편주의와 문화적 상대주의의 문제가 축약되어 나타난 대표

적인 사례가 집단 권리(group rights)의 문제다. 집단 권리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원 사회에서 집단 수준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존중하는 문제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것은 소수 인종 집단이나 외국 이주민들 같이 주류 사회에서 벗어난 집단의 권리, 특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편주의와 문화적 상대주의를 연관지어 볼 때 문제는 간단치 않다. 서구 사회에서 살고 있는 이슬람 공동체나 동아시아 집단은 소수 집단의 고유한 문화를 존중하는 집단 권리를 요구한다. 문화적 상대주의에 근거하여 집단 권리를 요구 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보편적인 개인의 권리가 존중되는지 의구심을 낳는다. 소수 집단의 주체성이나 자율성을 인정하는 집단 권리의 타당성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개인의 권리 침해를 도외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집단 권리는 오늘날 인권 운동가들이 안고 있는 난제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Freeman 1994, 511).

이와 같이 인권 인식이나 실행 제도의 사회적, 문화적 차이는 끊임 없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게 되겠지만, 각 사회의 교류가 증진되면서 그러한 차이는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척되어 가는 21세기의 시대 상황에서 인권의 문화적 다양성이 빠르게 줄어들 것이다(Pollis 1998). 이런 점에서 세계화가 인권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목하게 된다.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세계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선, 영토 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국제적 국가 체계가 퇴보하고, 그 대신에 국제기구의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국가 주권을 보장한 베스트팔리아조약(1648년) 이후 세계 질서의 바탕이 되어온 영토 국가들의 국제 관계 체계가 무너지고, 국경을 넘어서 세계 정부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임혁백 2000, 2장). 베스트팔리아 조약 정신에 따라 독자적 주권을 누리던 영토 국가의 행태와 위상은 국제 사회 규범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교류를 가로막고 있던 국경선의 구분이 세계화의 영향으로 느슨하게 되었다. 곧, 인권 실천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국가의 경계선이 해체되기 시작한 것이다. 교류 확대를 통해 지역간 가치가 줄어들고, 인권과 관련된 정치적 악용 가능성성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인권을 사회의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는 세계 기준(global standards)이 만들어지고 있다. 여성 차별 철폐 협약, 어린이·청소년 권리 협약, 고문방지 협약, 소수 집단 권리 선언 등 여러 형태의 국제 협약이 의심할 여지없이 인권의 국제적 규범화에 기여하였다. 국가는 점점 세계 기준과 동떨어진 인권의 사회적 관행이나 제도적 장치를 고집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국제 사회의 규범인 인권 실천을 위한 국제 협력이 강화되었다. 정부 기구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구의 활동이 활성화되었으며, 인권을 국제적 수준에서 집합적으로 보증하는 체제가 구축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비엔나의 국제인권회의(1993년), 중국 베이징의 세계여성대회(1995년), 더번의 반차별 인권회의(2001년)에서 거듭 확인되었다 (Clark · Friedman · Hochstetler 1998). 또, 유엔은 1993년에 인권고등판무관의 직위를 만들어 인권 감시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1998년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국제상설형사재판소 설립을 추진하였고, 반인종적 범죄에 대한 개인적 처벌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¹³⁾

아울러 인권의 보편주의에 대한 탐구가 활성화되었다. 각 사회의 문화적 차이,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갖는 보편적 권리”의 중요성이 거듭 확인되었다. 보편적 존재인 인간이 영토 국가의 경계선으로 말미암아 인권 유린을 겪는다거나, 인권의 기본 개념을 훼손한 채 상황에 따른 자의적 상대적 인식과 평가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하고 나선 것이다.

13) 2001년 6월에 유고 연방 대통령이었던 밀로세비치가 보스니아와 코소보에서 벌인 인종 청소 범죄 혐의로 국제인권재판에 회부되었다는 사실이 그 단적인 보기이다.

한편,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지역 협력 체제가 강화되면서 생산, 소비, 금융 등 경제 각 부분의 통합과 교류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신자유주의가 세계 질서를 통제하는 주요 이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생겨나는 인권 위협 요소에 대하여 주목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세계 각국에서 고용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자본의 지배력이 더욱 증대되면서 신자유주의와 자본이 세계 질서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해 가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화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IMF)·세계무역기구(WTO) 같은 국제 기구, 또 그러한 국제 기구에 영향력을 가진 강대국, 강대국을 배경으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 등의 영향력이 전례 없이 커지게 되었다. 결국 그들의 영향력 아래서 새로운 패권주의가 작용하게 되고 문화적 상대주의는 설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인권이 국제적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지만, 세계 패권주의 탓으로 ‘인권 실행의 관행’이 강대국의 영향력 아래 놓이며 문화적 침략 도구로 전락할 위험에 놓이게 된 것이다.¹⁴⁾ 이러한 인권의 이중적 위상 탓으로 인권의 보편주의와 문화적 상대주의에 관련된 쟁점은 21세기에도 여전히 끊임 없이 일어날 것이다.

(3) 발전주의와 생태주의

앞서 논의한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그리고 보편주의와 문화적 상대주의는 일정한 부분에서 성격상 서로 연관되어 있다. 공동체주의는

14) 2001년 1월에 출범한 미국의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MD) 정책이나 교토 기후 의정서의 비준 거부는 강대국에 의해 인권 관련 기준이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냉전 체제로의 회귀를 획책하는 미사일 방어 정책이나 온난화 현상에 대한 세계적인 공동 대응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기후 조약 비준 거부는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기본 인권 침해 요소를 갖고 있지만, 그러한 결정에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문화적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비서구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며, 서구에서 발전한 개인주의는 인권의 보편주의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이론적 관점이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다.

이 단원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경제 발전’ 문제 역시 사회 조건이나 발전 정도, 역사적 경험, 인권 인식, 인권의 향유 등에 따라 입장이 다양하다는 것을 보게 된다. 경제 발전이 인권 발전과 깊이 관련된다는 면에서 발전주의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크게 경제 발전을 위해 인권을 유보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입장과, 경제 발전은 인권 증진의 기본적 조건이며, 따라서 경제만이 아니라 인간 발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인권을 발전의 대가로 지불한다는 의미에서 ‘인권 대가 지불 입장’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인권 증진을 위해 발전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발전 보조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 대가 지불 입장’에서는 경제 발전을 이룬 뒤에 인권 발전을 도모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인권 보호와 증진이 궁극적인 관심이 있는지 의구심이 듦다. 비서구 국가의 많은 지도자들이 취하는 이 입장은 박정희의 개발 독재(박홍규 1996)나 싱가포르를 수십 년 동안 통치한 리콴유가 내세우는 개발도상국가 정치 지도자들의 빈곤퇴치 헌신 주장(벨 1996, 47에서 재인용)에서 보듯이 국가 안보, 발전지상주의적 인 국가주의 등과 결합되어 나타났다.

그들의 주장은 또한 문화적 상대주의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받은 아시아는 발전 과정이 서구와 다를 수밖에 없으며 독자적인 고유한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시아의 인권 내용이나 강조점, 인권 실행 방식이 서구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 상황에 따라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유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곧, 아시아의 당면 과제인

빈곤 퇴치와 경제 발전을 위해 인권을 일정 수준까지 유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경제 발전을 위하여 인권을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도널리(Donnelly 1989, 164-166)는 세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적은 자원을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 정책을 위해 쓰는 것 대신에 투자 극대화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절대 빈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욕구 대가 지불(the needs trade-off)’ 유형이다. 둘째는 발전하기 위해서 평등을 희생한다는 ‘평등 대가 지불(the equality trade-off)’ 유형이다. 이 유형은 다시 전통적인 경제 체제에서 근대 경제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 불평등이 증대하지만 전체 수입이 커지면 불평등은 원래대로 줄어들게 된다는 ‘소극적인 평등 대가 지불’ 입장과 불평등은 발전하면서 생기는 불가피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발전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보는 ‘적극적 평등 대가 지불’ 입장으로 나뉘어진다. 셋째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실천이 최상의 발전 계획을 지연시키거나 파괴하는데 작용하기 때문에 유예시켜야 한다는 ‘자유 대가 지불(the liberty trade-off)’ 유형이다.

이러한 인권 대가 지불 입장은 발전을 빌미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억압을 정당화하며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를 지속해 온 국가 지도자들의 논리였다. 그들은 모두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권리를 유보하지만, 발전을 이루면 그 혜택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권리 증진을 이루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 지도자들이 내세우는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을 위한 인권 유보는 사실상 지배 집단의 이익 유지를 위한 수단이었다(정영선 1999 ; 박홍규 1996). 또, 인권을 억압한 권위주의 정치 체제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 근거도 없었다(Sen 1999 ; Donnelly 1999, 628에서 재인용). 욕구 대가 지불 정책을 쓴 브라질의 경우에서 보듯이 경제 성장이 자동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권리 증진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세계 기준으로 볼 때 분배가 비교적 평

등하게 이루어졌다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인권이 증진되었다고 하지만 (Donnelly 1989, 166-183), 실제로 불평등의 심화, 정치적 억압 구조가 지속되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 발전의 성과 배분에서 소외되었으며, 인권 침해가 사회 전반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발전을 위하여 인권 희생이 불가피하게 한다는 발전주의로 말미암아 1980년대 초까지 인권과 경제 발전은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긴장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발전의 개념을 좁은 의미의 경제 성장에서 평등과 사회 정의를 포함한 인간 개발, 사회 개발로 확장하면서 경제 사회 발전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순기능적 발전주의가 제기되었다. 곧,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는 경제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발전할 수 있다는 ‘발전 보조 입장’이다. 따라서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은 인권 증진과 밀접하며,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 인권 발전의 조건으로 인식되었다(Donnelly 1999). 더 나아가 경제 발전 자체보다 그 결과물의 분배가 인권 보호와 증진에 직결 된다는 점을 중시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서 인권 단체와 국제 인권 기구를 중심으로 발전권 증진을 위한 더욱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추진되었으며(이대훈 2000), 발전권에 대한 세계적 인식이 확대되었다. 이미 1986년에 발전권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을 채택한 유엔은 새로운 의미의 발전권이 확산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Forsythe 1989 ; van Boven 1989). 1993년 비엔나 국제인권회의에서는 “발전 권리에 대한 선언에서 정리된 대로 발전권은 보편적이며 양도 불가한 권리이며 기본적인 인권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거듭 확인하였다.¹⁵⁾ 그리고 1994년에 카이로의 국제인구 및 발전회의, 1995년에 베이징의 세계여성대

15)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12.07.93. A/CONF.157/23
(행동 강령 10.) <http://www.unhchr.ch>에서 문건 데이터베이스 참조.

회와 코펜하겐의 세계사회개발 정상회의 등을 통하여 발전권의 실질적인 실행을 모색하는 여러 활동이 국제적 수준에서 전개되었다.

발전권 실행을 위한 유엔의 대표적인 공식 기관인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에서는 인권 실현의 강력한 장애 요소인 빈곤 타파를 중심 과제로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인간 개발(sustainable human development)을 통한 인권 실현을 도모하였으며,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공치(governance)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노력하였다.¹⁶⁾ 유엔개발계획에서는 인권과 인간 개발이 “동기와 관심사에 있어서 서로 양립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을 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UNDP 2000, 19)에 있다면서 이 둘 사이의 접근 방식이 내용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상호 보완적이며 상승작용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곧, 인권을 올바로 이해하면 인간 개발을 위한 사회 구성원의 책임과 의무를 인정하게 될 것이고, 다른 한편 인간 개발은 인권 실현의 사회적 여건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보기를 들어, 교육받을 권리를 인식하면 인간 개발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게 될 것이고, 인간 개발을 통해 사람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활동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면 인권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인권 실천을 위한 사회적 자원 활용이 훨씬 쉬워질 것이다(UNDP 2000, 21-24).

이와 같이 인간 개발 개념의 발전을 통해 기본적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전통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그 결과 적정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교육받을 권리, 일할 권리, 똑같은 일에 대한 동등한 임금을 받을 권리, 고유한 문화·종교·언어를 누릴 소수 집단의 권리 등이 인권으로 인식되었고, 어린이·여성·원주민·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 집단에 대한 권리 보호와 증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또한

16) <http://magnet.undp.org/Docs/policy5.html>의 문건 참조.

지역이나 국가간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인권 실천의 양상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체제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인권 증진의 노력을 통해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인간 안보’(human security)의 문제까지 인권 개념을 확장하였다(UNDP 2000, 35–37). 실제로 인간 생활 속에서 겪는 위협은 광범위하며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등 다른 국가로부터의 위협, 체포, 구금, 고문 등 국가로부터의 위협, 종족 갈등, 범죄, 거리 폭력, 가정 폭력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위협과 같이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영역뿐만 아니라, 강간 등 여성에 대한 위협, 어린이 학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위협, 인종 중오와 폭력 등 소수 인종에 대한 위협과 같이 특정 집단에게 해당되는 다양한 형태의 신변 안전 문제까지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인종차별국제협약, 고문방지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어린이·청소년 권리협약 등 다양한 선언이나 협약을 채택하는 것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국제 사회의 관심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인권 개념의 확장과 실천 증진의 바탕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 발전과 인권 증진을 연결짓는 발전주의의 순기능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발전 지향적인 정책과 소비 중심의 사회 조류가 낳은 자연 환경의 폐해와 그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이것은 산업 사회의 등장과 과학 문명의 지배가 가져온 인류 사회의 딜레마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또, 생물 공학의 발달로 인간 탄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과학에 의해 지배되는 상황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과학적 위협은 이전 어느 시대보다 심각하고 절박하게 되었다. 기술 혁신과 과학 문명이 낳은 빛과 그림자, 산업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과 경제 성장이 가져온 양면적 상황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다.

과학 발달과 산업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인류 사회는 물질적 풍요와 삶의 질의 향상을 누리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화와 자본주의가 낳은 생태계 위기로 말미암아 인류의 안전은 더욱 위협받게 되었고 그 영향은 일상 생활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환경이 훼손되면서 인간 사회는 위험을 일상적으로 겪게 된 것이다. 그런데 위험에 노출되는 수준에도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이 생겨났다. 빈곤이 위험을 만연시키는 반면에, 부자는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자유를 사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백 1997, 75–84). 그러나 백의 지적대로 위험의 부메랑 효과로 말미암아 결국 어느 누구도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환경 위기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점에서 환경은 더 이상 인권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환경 오염의 정도는 ‘인간 안보’의 중요한 측정 기준이 되었고, 환경에 관련된 새로운 파라다임의 요구가 인권 보호와 증진에 직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 기술에 대한 비판적 통제가 요구되었다. 개발 지향적인 사고 방식을 버리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체제 구축을 강조하게 되었다. 특히 산업화가 미친 생태계 파괴에 대한 이해, 자연 환경의 훼손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생태계 보존, 자연 친화적인 사회 건설 등을 강조하는 생태주의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등장하였다. 더 나아가 산업 자본주의 체제에서 강조하는 확대 재생산과 공리주의적 지향성이 만들어 놓은 환경 문제를 직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의 비엄밀성을 비판하면서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이홍균 2000).

생태계의 파괴가 인류의 멸망을 가져올 것이라는 위기감의 확산 속에서 발전 진행을 늦추려는 시도가 각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생태계 위기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기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단적인 보기를 교토 의정서의 진행 과정에서 볼 수 있다. 지구 온난화가 인류 사회의 문제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1997년 12월 온실효과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한다는 교토 의정서가 채택되었고, 세계 각 국의 비준이 진행되었다. 이것은 1990년에 대비하여 2008~2012년에 탄산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한다는 국제적인 약속이었다. 이것은 특히 기존의 거대 산업국가가 적극 참여하여야 할 사안이었다. 그런데 부시(George W. Bush)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이 이 조약의 비준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¹⁷⁾ 전세계 인구의 단 4%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온실효과가스의 25%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협조가 세계적인 환경 개선 협력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은 분명하다.

이와 같이 환경 위기가 인류 사회의 최대 현안 문제라고 인식하고, 또 인권 실천의 장애물로 작용하게 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환경 개선을 위한 집합적 노력이 쉽지 않은 것이다. 21세기의 시대적 요구는 지구 환경 보존을 통한 인권 향유에 있지만, 생태주의 입장과 발전주의 입장은 끊임없이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사회의 궁극적 목표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생태주의와 발전주의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요망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발전주의의 순기능적 역할을 도모하면서 또한 인권 영역에 환경 문제, 생태주의적 접근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18세기부터 시작된 시민적·정치적 권리 강조가 20세기로 넘어오면서 경제적·사회적 권리 영역으로 확대된 것도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였듯이, 생태계의 위기에 대한 인식, 발전과 환경의 조화 등은 21세기에 특히 중요한 관심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인권에 내재된 역

17) 최근 독일의 슈뢰더 수상이 교토 의정서에 대한 부시 대통령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하였을 때, 부시 대통령은 단호하게 “우리들은 협력하겠지만, 그 협력은 우리나라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Time 2001. 4. 9 : 각주 14) 볼 것).

사성·다양성·불가분성·보편성·양도불가성 등의 기본 성격을 감안하여 인권을 인류 사회의 핵심 규범으로 확립해 가는 집합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김중섭 2001), 또 인권 개념과 영역의 확장, 범세계적인 수준에서의 인권 실천 증진이 지속된다는 측면에서, 21세기의 시대적 과제를 반영하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논의는 인권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호 보완성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21세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인권은 세계적인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인권 개념도 꾸준히 확장되고 있으며, 사안에 따른 새로운 쟁점이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조건에 따라 인권의 인식 수준과 내용이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인권 실천은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여러 차원에서의 사회적 장치가 요구된다(김중섭 2000·2001). 인권 실행의 법적 제도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실제 사회에서 실행되도록 사회 각급 기관의 감시와 보호가 요망된다. 이러한 임무는 국가에게만 주어진 것 이 아니라 시민 사회, 개인 등 여러 유형의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똑같이 요구된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수준에서, 또 정부 기구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구 사이에서 여러 차원의 연대와 협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실질적인 인권 보호와 증진 활동에는 인권 문화가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또 인권 증진 활동의 사회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인권 문화의 정착과 확산이 시급하다.

요컨대,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주는

정치 질서와 인간 존엄을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경제적·사회적 역량, 인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문화적 바탕 등 다각적인 차원의 사회적 조건이 인권 보호와 증진에 작용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계에 주목하게 된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이 복합적인 사회 문제를 결정하는데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또 민주주의 체제는 사회가 유동적이며 복합적인 요소들로 뒤얽혀있으며 사회 구성원이 이질적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democracy)는 어원상에서 보듯이 ‘인민의 통치(rule by the people)’를 뜻하며, 인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곧, 비담(1994, 149)의 말대로 민주주의는 “집단적인 구속력을 갖는 규칙과 정책에 관해 인민이 통제를 행사하는 의사 결정의 양식”이다.

곧, 권력의 원천은 인민에게 있으며, 인민의 의사에 따라 사회 규칙과 정책이 결정된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는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의 문제를 강조하고,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동의 문제를 중시한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은 의사 결정 과정에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자로서 존중받게 되고, 그 기반 위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자리잡게 된다. 민주주의의 제도화는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상황에 따른 일관성 없는 의사 결정보다 법의 통치를 강조하게 되고, 법의 명문화를 주장하는 헌정주의(constitutionalism)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민주주의 제도는 사회 구성원의 의사 결정 참여를 강조하는 정치 질서이기 때문에 구성원의 주체적인 민주적 참여 권리(인권)를 보장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따라서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시민적 권리의 기본적인 내용은 민주주의 실행의 기본 조건이며, 대표자를 선출하는 투표권이나 피선거권은 민주주의 실현과 직결된 권리다. 따라서 이러한 인권 실천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바탕인 것이다.

물론 인권 자체가 반드시 민주주의와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시민적 권리의 많은 부분은 민주주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지만, 경제적·사회적 권리 가운데에는 민주주의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것도 많다. 보기들 들어, 교육받을 권리, 기초 생계 유지 권리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권 가운데에는 ‘비’민주적(undemocratic)인 것은 아니지만, 민주적인 것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무’민주적(non-democratic)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도 많다(Jones 1994).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복 추구권도 그 자체가 ‘민주적’ 절차나 방법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권리가 올바로 행사되어야 한다. 보기들 들어, 교육받을 권리의 확대는 민주주의 발전의 토양이 되며, 기초 생계 유지 권리는 민주주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자율적이며 주체적 존재로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조건을 제공해준다. 그러므로 인권 증진이 민주주의 실현에 기초적인 요건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반드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보기들 들어, 권력의 위임을 전제하며 불평등한 권리 배분을 인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는 성격상 인권의 평등 개념과 배치된다(Fields · Narr 1992, 12).

효율성을 위해 채택하고 있는 다수결의 원칙은 모든 구성원의 권리가 균등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소수의 결정이 무시될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수 집단의 주장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다고 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원하는 사회적 관행이 언제나 인권을 보장해주는 최선책이라는 의미도 아니다. 보기들 들어, 낙태를 허용하는 사회적 관행은 태아의 생존권을 침해하며, 다수자가 합의하는 동성간의 결혼 금지 관습은 성적 배우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된다. 또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합법화된 사형제도는 인권의 기본 내용인 생명권과 충돌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와 인권이 직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갈등 관계에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실현과 인권 보장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인권 확립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본적인 조건이며, 민주주의가 올바로 확립될 때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은 서로 친화적이며 상호 보완적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곧, 민주주의는 인권 실행의 도구이고, 인권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규범이자 내용이라는 간단한 도식에 도달하게 된다(Fields · Narr, 12). 민주주의는 정치 질서, 국가 체계 결정의 주요 방법이며 절차인 반면에, 인권 실행은 민주주의라는 기본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고 실현하는 내용인 것이다. 만약 자유로운 교제, 선택, 정보 획득, 단체 결성 등의 권리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의미 없게 될 것이며, 또 권력의 제도적 분립이 없다면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법의 지배’는 실현되기 어렵고, 개인의 권리 보호, 공정한 재판과 정당한 절차 등은 허구적인 것이 되고 말 것이다(비담 1995, 151-152).

이처럼 인권과 민주주의는 여러 차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인민의 참여와 선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공정성(fairness)과 자기 결정권(self-determination)을 강조하는 민주주의는 인권 보장과 향유의 사회적 장치이며, 인권 실행의 실질적인 사회적 조건인 것이다(Jones 1994). 그러나 그 둘의 역사적 궤적은 대조적이었다. 민주주의 성립을 위한 투쟁은 오랜 세월 범사회적인 지지 속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반면에, 인권에 대한 투쟁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Beetham 1997). 부분적으로 그 이유는 민주주의를 향한 정치적 투쟁이 사회 구성원 전체의 관심을 끄는 반면에, 인권을 위한 투쟁은 성격상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수의 활동으로 간주되어온 전통 탓에 있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주주의와 인권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하며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이 둘의 위상이 올바르게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민주주의의 왜곡과 불완전성이 시정되고 극복되어야 한다.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는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대의제 민주주의나 다수결의 원칙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대다수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신은 퇴색한 채 형식적 틀만 강조되고 있다. 심지어 위장된 민주주의가 등장하기도 하고, 권위주의 체제만 유지한 채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자유민주주의를 내걸고 있는 국가에서 조차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유지한 채 인권 존중과 민주주의를 올바로 실행하지 않고 있다. 의사 결정에 참여할 기회 박탈, 민주적 자질을 갖추는데 필요한 기회의 불평 등, 빙곤이나 인종 갈등에서 생겨나는 극도의 사회적 적대감 등 민주주의 실천에 방해되는 장애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한편, 구성원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사회적 여건이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 구조에서 구성원의 다양한 견해 차이를 좁히는 방안을 찾고 실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현안 문제가 생겼을 때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안을 처리하는 것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또 사회 구성원이 선출한 대표자의 통치를 평가하고 견제하는 것도 쉽지 않다(Diamond 1993).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책임을 부여하지만, 실제로 그가 구성원의 뜻대로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으며, 결과에 대한 책임 추궁도 사후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며 그들의 뜻을 존중한다는 민주주의의 원래 취지가 온전히 지켜지기는 결코 쉽지 않다. 결국 민주주의는 인민의 참여와 선택을 보장하는 제도로 계획된 것이지만, 실제로 오늘날의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인민의 참여와 선택 기회는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 제도는 ‘인민의 통치’를 도모하지만, 사회 여건 속에서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내용과 절차를 명문화하여 구성원들의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설적으로, 구성원들의 참여와 선택에 따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구성원들의 신뢰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이른바 “신뢰 구축을 위한 불신의 제도화”(임혁백 2000, 144-148)가 필요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인권은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적인 요건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권 개념이 크게 확장되어온 20세기만 하더라도 국가 독일나치나 일본 제국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의 군국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정부 아래서 인권은 철저하게 유린되었으며, 그러한 인권 유린에 국가와 정부가 실질적으로 개입하거나 심지어 수행하였던 경우를 보게 된다. 오늘날에도 국제 사회 교류의 장벽으로 작용하는 민족 국가가 인권의 보편주의를 실천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위기로 진단하든지, 민주적 자본주의 국가의 위기로 진단하든지 간에(헬드 1988, 256-264) 현실적으로 국가는 실질적인 인권 보증과 증진에 중요하며 유용한 도구일 수밖에 없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구성원에 대한 권리를 지켜주고, 개인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 국가의 주요한 임무는 인권 보증과 증진에 있으며, 그에 따라 국가는 구성원들과 국제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Galtung 1994). 이런 점에서 인권 실천을 증진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국가 및 사회 건설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를 살펴보면서 인권 실천 증진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른바 디지털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정치 행태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대안 민주주의 방식으로 떠오르는 전자 민주주의를 상정하게 된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정보 접근의 확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정치 참여의 확대, 시민운동 단체의 활성화 등에 기여하며 “국민 없는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치 과정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윤성이 2000, 138).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민주주의가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지는 않는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실행자의 의식과 사회제도 및 문화적 바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빅 브리더의 지배’에서 보듯이, 기술 문명의 인간 지배나 기술 조작을 통한 전체 사회 지배 위험 등을 감안할 때, 전자 민주주의라는 형식적 틀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주체성에 근거한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병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새로운 정치 행태를 낳을 가능성은 중시하면서, 아울러 실행 과정에서 생겨날 인권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를 개선하는 또 다른 방안으로 참여 민주주의를 고려하게 된다. 참여 민주주의는 사회 구성원이 국가나 사회의 각 영역에 직접 참여하여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사고 방식에서 이것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거나 문제 해결에 개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령 실현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비효율적이라고 본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적은 수의 참여로 말미암아 빚어진 권력 집중과 비민주성은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결함으로 이어졌으며, 더 나아가 민주주의나 인권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참여 민주주의를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하게 된다.

우선,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여러 각도의 대안이 모색되었다. 그 대표적인 보기가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와 각각의 상호 의존적 변혁이 필수적이라는 이중적 민주화이다(헬드 1988, 316). 이러한 민주주의는 자율성의 원칙아래 국가 권력의 재형성과 시민 사회의 재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시민 사회는 사회 각 부분에서 구성원들의 자율

성과 동등한 참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의 구체적인 대안으로 평가되며, 따라서 그 역할에 대한 기대도 크다. 곧, 시민 사회의 활성화는 민주 사회 건설의 중요한 방안이자 결과의 모습으로 비춰진 것이다. 지배 권력의 억압과 전횡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한 민주화가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역 공동체, 일터 등 사회 각 부분에서 일어나리라고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대는 21세기가 반드시 새로운 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막연한 희망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다. 그것은 역사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18세기 국가의 절대 권력 행사를 견제하면서 시민 사회가 등장한 것이다, 최근 동유럽 공산 정권이 몰락하면서 다시 등장한 시민 사회가 특정 집단의 권력 독점, 국가의 계획 경제와 사회 통제를 해체하는 주역으로 기여하였다 사실에서 시민 사회가 민주주의 실천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권력 집중과 견제를 도모하는 건강한 시민 사회는 시민 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형성된다. 또한 시민 사회의 육성은 사회 구성원이 주도하는 다양한 형태의 시민 단체 발전과 직결된다. 그러므로 시민 사회는 국가나 정치 집단의 과도한 권력 남용을 막는 장치로서 성장하게 되며, 아울러 정책 결정 과정에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되는 사회적 기제로서 자리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국가와 시민 사회가 상호 보완적이며 견제하는 성격을 갖고 제 위치를 갖게 될 때, 또 사회 구성원들이 시민 사회에 적극 참여하게 되는 참여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게 될 때 비로소 민주주의와 인권이 사회의 기본적 토대가 될 것이다.

4. 맷음말: 민주주의를 바탕에 둔 인권 시대를 향하여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보듯이 인권과 민주주의는 21세기 인류 사회의

핵심 어휘이면서 또 절실하게 대두된 과제이기도 하다. 산업 자본주의의 발전과 신자유주의의 확대로 말미암아, 또 민족 국가의 권력 체계와 문화적 상대주의 사조로 말미암아 인권과 민주주의가 여전히 위협받고 있지만, 인권 보호와 증진을 향한 인류 사회의 전세계적 조류는 더욱 확산되며, 그에 필요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도 쉽게 식지 않을 것이다.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간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또 보편주의와 문화적 상대주의 사이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또 발전주의와 생태주의 간의 강조점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권 실천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강조될 것이며, 그 실천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제 기구의 발전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구의 활동이 유례없이 활발해지고 인권이 국제적 통치규범(regime)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¹⁸⁾ 21세기는 인권 중심의 시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권 관련 국제법이 정비되고 국내 입법을 요구하는 규약 체결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인권 실행을 위한 세계적인 노력이 인권 문화의 발전과 함께 크게 늘어난다는 사실에서도 그러한 기대를 갖게 된다(김중섭 2000).

그러나 세계화로 말미암아 국가간의 경제력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강대국이 국제 사회에서 행사하는 권력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에서, 보스니아와 코소보 같은 민족주의 갈등, 스리랑카와 같은 소수 인종 분쟁, 르완다 등지의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종족 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같은 종교 분쟁, 카슈미르에서와 같은 지역 분쟁 등 세계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21세기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또 국가 내에서 벌어지는 계급간·집단간의 갈등과 불평등 역시 여전

18) 비정부기구의 활동에 대한 연구 결과물은 최근 엄청난 분량으로 나오고 있다(인권에 관련된 조효제 편역 2000 : Clark · Friedman · Hochstetler(1998) : 이원웅 1996 등 참고).

히 지속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분명 인권 보증의 커다란 걸림돌이며 민주주의 실현의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인권 실천 노력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인류 사회의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등한 인간 존엄의 향유가 인류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로 인식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며, 인권 보호와 증진에 대한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아울러, 시민적·정치적 권리로부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환경권·발전권 등에 이르기까지 인권 개념이 확장되고 적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인권 증진과 실행, 감시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제도화되고 있으며, 일상 생활 뿐만 아니라 국제적 관행에서 인권이 중심 가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오랜 세월 주권 국가의 불간섭 원칙에 따라 면책 특권을 갖고 있던 국가 원수의 개인 처벌이 실현되는 것에서 보듯이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 응징이 강화되어 가고,¹⁹⁾ 또 유럽·미주·아프리카·아랍권 등에서 집합적인 인권 보증 체제의 성과가 점점 커져간다는 측면에서 점진적으로나마 인권 실천이 진보해가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추세로 미루어 보아, 21세기는 여전히 미완의 인권 실행 체제이며 미완의 민주화 상태로 시작되었지만, 앞으로 인권의 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해 본다. 아울러 좁은 의미의 정치 민주화를 넘어서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사회 각 부문의 민주화가 공고화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19) 대표적인 보기로 보스니아와 코소보에서 일어난 이른바 '인종 청소' 범죄 책임을 물어 밀로세비치 전유고와 연방 대통령을 국제인권법정에 세운 것이나 실종자 등 인권 유린 사건의 책임을 이유로 칠레의 옛 대통령 피노체트를 영국 법정에 세운 것을 들 수 있다(조효제 2000). 밀로세비치에 대한 재판은 진행중이지만, 피노체트는 결국 전강상 이유로 칠레로 송환되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국내의 반인권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국제적 책임 추궁의 가능성을 보여준 선례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기든스, 안토니(이윤희·이현희 옮김). 1991(1990). 『포스트 모더니티』. 서울: 민영사.
- 김중섭. 1999. "후기 산업사회에서의 인권 실행과 새로운 사회운동: 동서 유럽의 비교 연구." 『현상과 인식』 23권 3호(가을호). 87-106쪽. 한국인문사회과학회.
- _____. 2000. "인권 실행의 사회적 장치: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24권 4호(겨울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37-61쪽.
- _____. 2001. "인권의 사회적 인식과 실천." 김중섭 엮음. 『한국 지역사회의 인권: 2001 진주지역 사례 연구』. 15-48쪽. 서울: 도서출판 오름.
- 노명식. 1991. 『자유주의의 원리와 역사: 그 비판적 연구』. 서울: 민음사.
- 도널리, 잭. 1996. "인권 개념의 보편성과 아시아적 가치." 『계간 사상』 8권 4호(겨울호). 28-45쪽.
- 로티, 리차드. 2000(1993). "인권·이성·감성." 스티븐 슈트·수잔 헐리 엮음. 『현대 사상과 인권: 옥스퍼드 앤네스티 강의』. 145-171쪽. 서울: 사람생각.
- 롤즈, 존(황경식 옮김). 1990(1971). 『사회 정의론』. 서울: 서광사.
- 룩스, 스티븐. 2000(1993). "인권을 둘러싼 다섯 우화." 슈트, 스티븐·수잔 헐리 엮음. 『현대 사상과 인권: 옥스퍼드 앤네스티

- 강의. 29-51쪽. 서울: 사람생각.
- 무자파, 찬드라. 1996. “이슬람과 인권, 그리고 동아시아.”『계간 사상』8권 4호(겨울호). 90-107쪽.
- 박영신. 1995.『우리 사회의 성찰적 인식: 전통, 구조, 과정』. 서울: 현상과 인식.
- 박찬운. 1999.『국제인권법』. 서울: 한울.
- 박홍규. 1996. “개발 독재와 인권: 아시아, 특히 한국의 국가 안보이데올로기와 인권 침해.”『민주법학』10호. 196-221쪽.
- 백, 윤리하(홍성태 옮김). 1997(1986).『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위하여』. 서울: 새물결.
- 벨, 다니엘. 1996. “서구적 인권 체제에 대한 동아시아의 도전.”『계간 사상』8권 4호(겨울호). 46-56쪽
- 비담, 데이비드. 1994(1992).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민주화의 한계.” 강정인·김세걸 엮음.『현대 민주주의론의 경향과 쟁점』. 149-175쪽.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슈트, 스티븐(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옮김). 2000. 수잔 헐리 엮음.『현대 사상과 인권: 옥스퍼드 앤네스티 강의』. 서울: 사람생각.
- 杉原泰雄(스기하라 야스오)(석인선 옮김). 1995(1992).『인권의 역사』. 서울: 한울.
- 연기영. 1996. “불교 전통과 인권의 제문제.”『계간 사상』8권 4호(겨울호). 75-89쪽.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엮음. 1995.『인권이란 무엇인가: 유네스코와 세계인권선언의 발전과 역사』. 서울: 오름.
- UNDP(유엔개발계획). 2000.『인권과 인간개발』. 서울: UNDP한국대표부.
- 윤성이. 2000.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경상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엮음.『디지털 혁명과 자본주의의 전망』. 131-157쪽.

- 서울: 한울.
- 임혁백. 2000.『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 현상·이론·성찰』. 서울: 나남.
- 이대훈. 2000. “발전의 권리와 개발.” 한국인권재단 엮음.『21세기의 인권』I권. C604-629쪽. 서울: 한길사.
- 이삼열. 1999. “아시아적 가치는 있는가?: 문제의 상황과 논점.”『철학연구』44집(봄호). 1-15쪽.
- 이승환. 1998. “유교와 인권: 상호 보완의 필요성에 대하여.” 한상진 엮음.『현대 사회와 인권』. 99-119쪽. 서울: 나남출판.
- 이원웅. 1996. “國際人權례집의 特性과 動態에 관한 研究: 非政府機構 NGO의 役割을 中心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홍균. 2000.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 대한 비판: 열린 체계와 닫힌 체계.”『한국사회학』34집. 807-831쪽.
- 장은주. 2000. “문화적 차이와 인권: 동아시아의 맥락에서.”『철학연구』49집. 155-178쪽.
- 정경수·김정훈. 1999. “1993년 비엔나 선언의 의의와 전망.” 박기갑 편저.『21세기 국제인권법의 과제와 전망』. 서울: 삼우사.
- 정영선. 1999. “아시아적 가치와 인권 흥정 논리.”『호남정치학회보』11권. 121-145쪽.
- _____. 2000a. “인권 논리의 아시아적 접근과 쟁점: 인권의 보편성과 경제성장론의 충돌을 중심으로.”『인권과 평화』1권 1호. 79-97쪽.
- _____. 2000b. “인권 사상의 재인식과 인권의 보편성: 권리 주체의 재인식과 ‘상대적 보편성’ 논의를 중심으로.”『한국동북아논총』16, 207-225쪽.
- 조효제. 2000. “인권의 정치학: 피노체트 사건을 중심으로.”『인권과 평화』1권 1호. 1-33쪽.

- 조효제 편역. 2000.『NGO의 시대: 지구시민사회를 향하여』. 서울: 창작과 비평사.
- 존슨, 글렌. 1995.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엮음.『인권이란 무엇인가: 유네스코와 세계인권선언의 발전과 역사』. 23-90쪽. 서울: 오름.
- 한국인권재단 엮음. 2000.『21세기의 인권』 I·II권. 서울: 한길사.
- 한상진. 1996. “인권 논의에서 왜 동아시아가 중요한가.”『계간 사상』 8권 4호(겨울호). 11-27쪽.
- 한상진 엮음. 1998.『현대 사회와 인권』. 서울: 나남출판.
- 함재봉. 1996. “유교 전통과 인권 사상.”『계간 사상』 8권 4호(겨울호). 108-120쪽.
- _____. 1999. “아시아적 가치와 민주주의: 유교민주주의는 가능한가?”『철학연구』 44권. 17-33쪽.
- 헬드, 데비드(이정식 옮김). 1988(1987).『민주주의의 모델』. 서울: 인간사랑.
- An-Na'im, Abdullahi 엮음. 1992. *Human Rights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A Quest for Consensu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Bauman, Zygmunt. 1991. *Modernity and Ambivalence*. Cambridge: Polity Press.
- Beetham, David. 1997. “Linking Democracy and Human Rights.” *Peace Review* 9(3).
-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Inc., Publishers.
- Buergenthal, Thomas. 1997. “The Normative and Institutional Evolu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Human Rights Quarterly* 19. pp.703-723.

- Burgess, Jan Herman. 1992. “The Road to San Francisco: The Revival of the Human Rights Idea in the Twentieth Century.” *Human Rights Quarterly* 14. pp.447-477.
- Castells, Manuel. 1996.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Oxford: Blackwells Publishers.
- Clark, Ann Marie · Elisabeth J. Friedman · Kathryn Hochstetler. 1998. “The Sovereign Limits of Global Civil Society: A Comparison of NGO Participation in UN World Conferences on the Environment, Human Rights, and Women.” *World Politics*. pp.1-35.
- Diamond, Larry. 1993. “Three Paradoxes of Democracy.” Larry Diamond · Marc F. Plattner 엮음. *The Global Resurgence of Democracy*. pp.95-107. Baltimore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Donnelly, Jack. 1989.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_____. 1993. *International Human Rights*. Oxford: Westview Press.
- _____. 1999. “Human Rights, Democracy, and Development.” *Human Rights Quarterly* 21(3). pp.608-632.
- Etzioni, Amitai. 1995. “Old Chestnuts and New Spurs.” Amitai Etzioni 엮음. *New Communitarian Thinking: Persons, Virtues, Institutions, and Communities*. Charlottesville. pp.16-34. London: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 Evans, Tony 엮음. 1998. *Human Rights Fifty Years on: A Reappraisal*.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Fields, A. Belden · Wolf-Dieter Narr. 1992. “Human Rights as a Holistic Concept.” *Human Rights Quarterly*. 14. pp.1-20.

- Forsythe, David P. 엮음. 1989.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Views*. London: Macmillan Press.
- Freeman, Michael. 1994.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Quarterly*. 16. pp.491-514.
- Freeman, Michael. 1996. "Human Rights, Democracy and 'Asian Values'." *Pacific Review*. 9(3) pp.352-366.
- _____. 1998. "Human Rights and Real Cultures: Towards a Dialogue on 'Asian Values'." *Netherlands Quarterly of Human Rights*. 16(1). pp.25-39.
- Galtung, Johan. 1994. *Human Rights in Another Key*. Cambridge: Polity Press.
- Gewirth, Alan. 1982. *Human Rights: Essays on Justification and Application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ward, Rhoda E. 1995. *Human Rights and the Search for Community*. Oxford: Westview Press.
- Howard, Rhoda E. · Jack Donnelly. 1989. "Human Dignity, Human Rights, and Political Regimes." Jack Donnelly,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 pp.66-87.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Huntington, Samuel P. 1993. "Democracy's Third Wave." Larry Diamond · Marc F. Plattner 엮음. *The Global Resurgence of Democracy*. pp.3-25. Baltimore;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Jones, Peter. 1994. *Rights*. London: Macmillan Press.
- Marfording, Annette. 1997. "Cultural Relativism and the Construction of Culture: An Examination of Japan." *Human Rights Quarterly*. 19. pp.431-448.

- Pollis, Adamantia. 1982. "Liberal, Socialist, and Third World Perspectives on Human Rights." Peter Schwab · Adamantia Pollis 엮음. *Toward a Human Rights Framework*. New York: Praeger Publishers.
- _____. 1998. "Towards a New Universalism: Reconstruction and Dialogue." *Netherlands Quarterly of Human Rights*. 16(1). pp.5-23.
- Robertson, A. H. · J. G. Merrills. 1993. *Human Rights in Europe: A Study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3판.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_____. 1996. *Human Rights in the World*. 4판.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Sen, Amartya(Janne R. Bauer · Daniel A. Bell 엮음). 1999. "Human Rights and Economic Achievements." *The Asian Challenge for Human Rights*.
- Shestack, Jerome J. 1998. "The Philosophic Foundations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Quarterly*. 20. pp.201-234.
- van Boven, Theo. 1989.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The UN Experience." David P. Forsythe 엮음.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Views*. London: Macmillan Press, pp.121-135.
- Wagner, Peter. 1994. *A Sociology of Modernity*. London: New York: Routledge.